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0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김위상·김은혜・박정하

김소희 · 송언석 · 김선교

우재준 · 임이자 · 박성민

박성훈 · 김형동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관리상태가 불량한 하수도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중요성이 높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 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대행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환경부 훈령인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 이 없는 것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업종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같이 기술진단의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

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5(기술진단 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술진단을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공단 또는 다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및 계약 방식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 대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기술진단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조의5(기술진단 대행 계약체
	<u>결 및 계약해지) ① 제20조의2</u>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
	청이 기술진단을 공단 또는 기
	술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u>야 한다.</u>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
	약을 체결한 기술진단전문기관
	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2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
	지하고 공단 또는 다른 기술진
	단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하여야
	<u>한다.</u>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및
	계약 방식 등 대행계약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